

# 중국근현대사학회 임시총회 및 결과 안내

(2017년 4월 29일(토) 16:00~16:30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4동 207호)

사회: 총무이사 이평수

## ■ 임시총회 개최 의결 건 보고

- 본 학회 회칙 <제3장 기구> 제9조 제1항의 “필요한 경우 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음.
- 이 규정에 의거, 2017년 3월 5일(일)부터 4월 8일(토)까지 총 35일의 기간 동안 임시총회 개최 여부(안건은 이하의 내용 참조)를 학회 공식 이메일(nan8506@daum.net)을 통해 173 명의 회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임시 총회 거부 의사를 밝히신 회원이 없었음.
- 이에, 지금부터 본 학회 회칙 <제3장 기구> 제9조 제2항(기능)의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는 것에 의거, 아래의 안건을 가지고 임시총회의 개최를 선포함.

## ■ 안건(1): 본 학회 회칙 개정 건

<개정 배경> (본 학회 현행 회칙 전문은 <별첨 1> 참조)

- 2017년 3월 24일(금) 오후 6시부터 진행된 2017년 제1차 운영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요구라는 회칙에 대하여, 그 실효성의 문제나 번거로움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었음.
- 이 문제에 대하여, 박○○ 회원의 경우도 2017년 3월 28일 10시 35분의 이메일을 통해 개정의 의견을 본 학회 공식 이메일로 전달하였음.

<개정 안>

현행	개정(안)
제3장 기구	제3장 기구
제9조(총회) 제1항(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총회) 제1항(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b>회원 과반수의 요구 혹은 회장의 요구에 의해 운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b>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결과>

- 본 학회 회칙 제6장 부칙 제20조에는 본회(정기총회/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안건(1)은 이번 임시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상기 개정(안)으로 의결되었음.

## ■ 안건(2):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개정 건

<개정 배경> (본 학회 현행 연구윤리규정 전문 <별첨 2> 참조)

- 2016년 10월 18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개정(<별첨 3> 참조)의 검토 결과,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개정이 등재학술지 유지를 위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2017년 3월 24일(금) 오후 6시부터 진행된 2017년 제1차 운영이사회에서 연구윤리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음.

<개정 안>

현행	개정(안)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b>필요에 따라(삭제)</b>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 <b>이하 '위원회'</b> )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본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회의 총무이사가 맡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본회 <b>운영이사회</b> 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회의 <b>회장</b> 이 맡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b>운영이사회</b> 에 보고한다.
제7조의 6.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안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제7조의 6.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안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위원장은 이를 <b>운영이사회</b> 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제9조(징계와 사후처리)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학회 회원 제명 2. 논문의 게재 취소 및 인용 금지와 학회지에 해당내용 공지 3. 학회에서의 필자의 공개 사과 및 학회지에 사과문 게재 4. 회원으로서의 일시적 자격 정지	제9조(징계와 사후처리) 위원회가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b>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b>  <b>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b> <b>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3년 이상)</b> <b>3.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를 통해 공지</b> <b>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위원회의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b> <b>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b>
제10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	제10조( <b>재심 및 보완</b> ) <b>운영이사회</b> 는 위원회의

<p>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논의한 후 위원회 결정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시행한다.</li> <li>2.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li> </ol>	<p><b>결정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b></p>
<p>제11조의 1.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p>	<p>제11조의 1. 본 규정의 개정은 <b>운영이사회</b>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p>
	<p>부칙 (추가) <b>(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4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b></p>

※ 본 학회 현행 연구윤리규정에 ‘운영위원회’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상 ‘운영위원회’ 라는 말은 회칙 제3장 기구 제10조의 ‘운영이사회’ 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현행 연구윤리규정의 ‘운영위원회’ 라는 표현을 ‘운영이사회’ 로 수정함.

**<결과>**

- 본 학회 회칙 제6장 부칙 제20조에는 본회(정기총회/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안건(2)은 이번 임시총회의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상기 개정(안)으로 의결되었음.

## <별첨 1>

---

---

# 中國近現代史學會 會則

---

---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국근현대사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연구자 상호간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근현대사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1항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제2항 학회지 또는 연구도서의 간행.

제3항 공동연구의 조직, 국내외 연구단체 또는 연구자와의 교류.

제4항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중국근현대사 연구에 종사하는 자 및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구분) 회원은 평의원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항 평의원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교육에 종사하는 자 및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전임교원인 자로 한다.

제2항 일반회원은 비전임 교원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로 한다.

제3항 준회원은 대학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4항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5항 평의원회원,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권리)

제1항 회원은 본회의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항 평의원회원과 일반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회원은 회칙과 본회의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취지를 위배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기구

#### 제9조(총회)

제1항(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기능)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사업의 기획·보고 및 예산 결산 승인 등 회무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제10조(운영이사회)

제1항(구성) 회장 및 총무부, 연구부, 편집부, 섭외부, 정보부, 학술부 등 각 부서의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제2항(회의) 격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소집이나 운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항(기능)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 제11조(편집위원회)

제1항(구성) 편집위원장과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제3항(기능)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의 논문 심사와 편집을 담당한다.

### 제4장 임원

제12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이사) 각 부서의 운영이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각부의 고유 업무를 집행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2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은 회장과 협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해외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해외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會 則

### 제5장 재정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9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장 부칙

제20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일반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2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개정)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24조(개정)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25조(개정)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별첨 2〉

---

---

#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윤리규정

---

---

2007년 12월 15일 제정

2008년 6월 28일 개정

제1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학술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연구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본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회의 총무이사가 맡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윤리 위반 정의)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연구의 진행과 결과에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위반 사항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연구윤리 위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회장이나 회원 5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전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전의 처리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지면상 혹은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5.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지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해당 연구자의 소명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6.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안전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윤리 위반 대상자와 해당 연구물
2. 연구윤리 위반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연구윤리 심사 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6. 최종 결과 및 징계 종류

제9조(징계와 사후처리)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학회 회원 제명
2. 논문의 게재 취소 및 인용 금지와 학회지에 해당내용 공지
3. 학회에서의 필자의 공개 사과 및 학회지에 사과문 게재

## 연구윤리규정

### 4. 회원으로서의 일시적 자격 정지

제10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논의한 후 위원회 결정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시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제11조(행정사항)

1.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수발한다.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중국근현대사연구 2008년 3월호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별첨 3>

#### ■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안) 신규대비표 (2016.10.18.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제9조(게재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p> <p>①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p>1. 관리기관의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li> <li>-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li> <li>-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공지</li> <li>-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결과 포함)을 통보</li> </ul> <p>2. 재단의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기관이 상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중략)</li> </ul> <p>②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은 재단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심의한다.</p> <p>&lt;신 설&gt;</p>	<p>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p> <p>① <b>학술지(우수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li> <li>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li> <li>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li> <li>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li> <li>5. <b>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b></li> </ol> <p>② <b>삭제</b></p> <p>③ 관리기관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b>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b>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연구부정행위를 포함</li> <li>•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포함</li> <li>• 철회사실 보존 조치 및 공지 강화</li> <li>• 연구지원기관에 연구부정행위 발생사항 통보</li> <li>• 조문정비(해당내용 제3항으로 신설)</li> <li>• 관리기관의 조치 사항이므로 재단의 계획 삭제</li> <li>• 사안에 따른 재단의 재량적 판단</li> </ul>